

투자권유준칙 개정대비표

시행일자 : 2024.03.01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4조(설명의무)</p> <p>1.~7.내용 생략</p> <p>8.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)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</p> <p>나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</p> <p>9.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0.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, 직책,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14조(설명의무)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(삭제)</p> <p>8. <u>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9. <u>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, 직책,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10. <u>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,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</u></p>	<p>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사항 반영</p>
<p>제15조(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)</p>	<p>제15조(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)</p>	<p>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</p>

<p>특칙)</p> <p>1.~2.내용 생략</p> <p>가.~라.내용 생략</p> <p>마.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험등급에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외화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외화 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 MMF를 매수하는 등 환전에 따른 별도의 손익 발생 우려(환율변동 위험)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, 이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</p> <p>3.내용 생략</p>	<p>특칙)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라.내용 생략</p> <p>마. (삭제)</p> <p>3.(현행과 같음)</p>	<p>준칙 개정사항 반영</p>
<p>제16조(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)</p> <p>1.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[별표 제3호] “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”와 같이 분류하며,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.</p> <p>가. 정량적 요소 : 과거 가격의 변동성, 원금손실가능범위,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, 신용등급, 만기,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</p> <p>나. 정량적 요소 : 과거 가격의 변동성, 원금손실가능범위,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, 신용등급, 만기,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</p> <p>2.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(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)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.</p>	<p>제16조(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)</p> <p>1.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[별표 제3호] “<u>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</u>”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한다.</p> <p>가. <u>기초자산의 변동성, 신용등급, 상품구조의 복잡성,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, 환매·매매의 용이성, 환율의 변동성,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</u></p> <p>나. (삭제)</p> <p>2. <u>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,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. 다만,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[별표 제3호] “<u>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</u>”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.</u></p>	
<p>(신설)</p>	<p>부 칙(8)</p>	<p>부칙</p>

	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기준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	신설
--	---	----